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6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배준영·서명옥·김희정

조은희 • 김소희 • 박성민

이성권 • 조지연 • 박수민

이달희 · 김민전 · 김기현

김미애 · 강명구 · 강민국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'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'을 포함하고 있음

한편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·도, 구·시·군, 읍·면·동 모두 각급 '선거관리위원회'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'중앙선거관리위원회'로 한정하고 있는 바, 이를 근거로 '중앙'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

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, '행정안전위원회'소관사항을

'중앙선거관리위원회'가 아닌 '선거관리위원회'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9호다목 중 "중앙선거관리위원회"를 "선거관리위원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	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		
항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9. 행정안전위원회	9		
가.·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
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	다. 선거관리위원회		
에 관한 사항			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		
10. ~ 17. (생 략)	10. ~ 17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